

## V.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금융의 국제화 및 금융권역간의 융합을 비롯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통한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의 적시성과 유용성, 그리고 목적적합성 제고를 위해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 현행가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보험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보험회계의 추진시 많은 보험사들의 반대로 인해 보험업의 경우에는 단계적 추진을 결정하여 우선 1단계에 해당되는 국제재무보고기준인 IFRS 4를 2004년 3월 공표하였다. 그리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논점에 대한 Discussion Paper는 2007년 3월에 발간될 예정이며,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은 2010년 발표될 예정이다.

보험업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보험사들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많은 반대를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보험업 또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2005년 EU 국가들의 경우에는 EU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미국 재무회계기준(US GAAP)을 사용하는 기업과 채무증권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회계기준인 US GAAP 사이에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Convergence Program을 서로 간의 합의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된다.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부채의 시가평가이다. 현재 보험사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은 상품 판매시의 기초율을 계약기간 만기시까지 적용하는 발행연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매 회계연도말에 해당 회계연도말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하게 된다. 이 경우 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은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기에 당기순이익 변동폭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손익변동폭의 확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는 보험사들의 경영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가. 재무제표의 변동성 증대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어 보험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예정 기초율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의 변동액을 매 결산기마다 평가하여 인식한 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산부채법의 적용으로 보험부채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뿐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변동성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변동성 증대 요인은 대차대조표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만기 구조의 불일치, 부채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조정 부분으로 인해 발생된다.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되는 발행연도 방식과는 달리 평가연도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부채의 공정가액의 변동액을 손익으로 직접 인식하기에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처럼 10년 이상 장기투자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변동성 증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 나.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시가 평가 및 자산 부채법의 적용은 보험사들의 손익 변동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은 물론 보험부채의 미실현 추정 손익까지 당기순이익에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신계약비의 당기 비용처리로 인해 기존의 회계처리방법인 발행연도법에서 보여주는 이익의 유연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다.

공정가치회계에서 공정가치의 변동은 이익 및 자본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별 변동은 금융자산의 시장가치 또는 추정 시장가치와 보험부채의 추정시장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는 많은 가정과 변수들이 있기에 이익의 예측과 추정은 현재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 손익을 포함하는 당기순이익이 현금흐름과 직결되지 않음에 따라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배당정책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성장률이 동일한 기업의 경우 이익의 변동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리스크 마진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조달비용이 불가피한 자본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보험사들의 자본조달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험사의 자본조달시 자본조달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원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며, 대체리스크 전가나 자가보험(self-insurance)과 같은 대체상품의 존재로 인해 이러한 원가상승의 전가가 쉽지 않기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험공급능력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 다. 투자형/단기 상품의 확대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특히 생명보험에서는 주요 상품에서 투자형 상품이나 단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산운용에 따른 영향을 보험사가 부담하기보다는 계약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고, 기간이 길수록 제 가정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보험상품에서 제공하는 옵션 및 보증비용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익의 변동성을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부 상품에 대한 유인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목인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에 대한 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손익계산서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고, 보험기간의 축소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자 하는 유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비상위험준비금 등 부가적인 준비금 적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의 시장전가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커져서 재무제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재해리스크의 인수나 금융재보험의 활동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라. 단기 위주의 자산 운용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이자율 변동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기 위해 장기보다는 단기 위주의 자산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지분 투자에서 채권 투자로 투자의 중심축이 옮겨 가고, 다시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만기가

짧은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변동성에 따르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단기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보수적인 투자와 낮은 수익률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와 같은 자산운용의 변화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보험상품도 자산-부채 대응을 위해 만기가 짧아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이에 따라 단기 채권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명보험과는 달리 별도의 이자율 보증이 없기에 단기 채권으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 위험 관리 개념의 변화 불가피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도입되면 위험관리활동은 원가중심점에서 이익중심점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험부채의 평가시 원가법을 적용하면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역량은 재무제표상에 수치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공정가액 평가에서는 지급여력비율 및 손익의 변동성 등을 통해 위험관리역량이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표시되게 된다. 따라서 보험부채 평가시 원가법을 사용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을 보험상품 선택시의 주요 판단요소로 사용하지 않지만, 공정가액 평가시에는 주요 판단요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위기관리능력 및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이익중심점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위에서도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보험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크게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가. 인식의 전환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환경 및 회계관행은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즉, 국내외 자본시장을 둘러싼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 패러다임 변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도록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즉, 정책당국의 사전 예고 및 향후 계획의 제시는 문제점을 사전

에 보완할 수 있어 성공적 정책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기에 정책당국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적용 대상,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 시기,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수용 방법과 형태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한 내용과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지식 수준을 높이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국가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행사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포석이 필요하며,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 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영향과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나. 보험가격 산출체계의 선진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현재 국내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산출체계는 3이원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자율, 위험률, 사업비율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체계이다. 그러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3이원 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로는 보험부채의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보험요율산출체계는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현금흐름방식의 요율산출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상품개발업무가 회사 전체의 경영목표, 전략 등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행해진

다. 또한, 현금흐름방식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초율뿐만 아니라 유지율, 판매규모, 옵션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목표이익의 설정에 따른 각 부서별 목표 성과 달성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된다.

과거에 사용하던 3이원방식에 의해서는 보수적 예정기초율 책정을 통해 주로 사업비율을 조정하여 이익을 실현했으나, 현금흐름방식하에서는 목표이익 부여 및 인수, 수당이나 투자계획을 비롯한 최선추정치의 조정을 통해 손익을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3이원방식의 요율 산출체계에서는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가 투자부서, 영업부서 등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금흐름방식의 요율산출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상품개발부서와 타 부서간의 업무에 있어서 보다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현금흐름방식 요율산출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기존 3이원 방식의 요율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3이원 외의 다양한 환경변수의 증가로 인해 적정손익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현금흐름방식의 종합적인 요율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 다. 시스템 구축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보험업계에서는 적절한 시장환경 시나리오를 계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보험회사의 주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도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최선추정을 위한 미래예측, 즉 시장환경 시나리오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계리적 관점은 계산(Calculating)의 개념에서 추정(Estimating)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추정의 개념에서 계리 과학의 발



전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 계리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계리적인 산출중심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추정 개념에서의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투자분석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부서별 책임경영 체계 도입을 위해 상품개발, 운영에 대하여 전사가 합의한 의사결정 및 부서별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미래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최선추정치 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경험데이터 관리 및 객관적인 미래 예측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체계적인 경험 데이터 관리를 위해 현재의 복잡한 상품 및 손익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가격산출매뉴얼(Pricing Manual)을 마련하여 상품개발 절차, 최선추정치 설정, PAD 설정, 원가분석에 따른 사업비 책정, 집행 및 배분기준 등에 대해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가격산출매뉴얼의 작성은 초기 보험사들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시행상의 곤란함이 있기에 감독기관을 비롯한 보험유관기관에서의 가격산출매뉴얼지침(Pricing Manual Guideline)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계리 전문가의 양성 및 자율적인 계리업무 권한의 인정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계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리 전문가들의 역량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계리 및 회계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및 교육을 통해 역량의 향상 및 능력을 높이고,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계리 및 회계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미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EU의 상장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크를 통해 도입과정에서의 혼란 및 문제점

들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리 및 회계 전문 인력들의 EU 상장보험사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역량을 배양하고, 계리법인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한 경험 및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계리업무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고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선임계리사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 등 단순확인 업무를 탈피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른 준비금의 충분성 등에 대해 경영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매우 높으며,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실무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수리실무는 캐나다 계리사회인 CIA(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외부계리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반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는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부채는 선임계리사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으며, 다만 계리사 간의 방법의 차이로 인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에서 통일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임계리사에 대한 독립성 및 권한의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독립성 및 권한의 인정을 통해 선임계리사들이 단순 업무를 벗어나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여 보험부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선임계리사들에 의한 자의적인 보험부채 평가와 선임계리사에 따른 지나친 편차를 막기 위해 보험부채에 대한 통일된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선임계리사들의 보험부채 판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실시하는 방향의 제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 마. 계리제도의 개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 최소화와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의 개념 변경, 책임준비금 제도의 개선, 해약환급금 제도의 개선, 계약자배당 제도의 개선과 같은 계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63조에 의하면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준비금의 개념을 보험료적립금은 계약자의 채권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준비금 또는 보험계약의 가치의 개념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별 계약건별 계산방식에서 유사위험별/보험상품별 통합준비금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상품별 유지율 등 다양한 가정을 반영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발행년도법 방식으로 결정되는 책임준비금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 가정 및 기초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핵심 내용인 부채의 공정가치(fair value) 평가에 대비하여 보험료, 보험금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포함하여 미래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는 영업보험료방식의 책임준비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도 계약자의 잔여지분의 지급 개념에서 급부의 지급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계약자에게 현금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급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옵션이나 보증 등의 경우에도 급부로 인식하여 가격산출을 하고,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표준해약환급금의 경우에도 최저 해약환급금 수준 이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약급부의 지급이 가능한 최저 해약환급금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 감독 방향의 전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방향에 있어서도 상품 개발 및 보험 요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최소화하고, 상품별 개요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선임계리사의 자율 검증 기능을 부여하고, 직접적인 요율통제 업무 대신 해약환급금 규정 준수, 준비금의 충분성, 일관된 가정설정 여부 등을 검증하는 상품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품심사제도의 개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반기나 연단위의 주기적인 검사시 준비금의 충분성에 대한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약관 및 공시서류 등에 대한 사전적인 심사는 강화하고, 보험 약관과 실제 상품 설계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며, 표시 광고 규정 위반 여부 및 약관 등에 대하여 계약자의 이해가능성 위주의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Policy Illustration Law나 Contract Readability Test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험 경영 및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원분석기준 및 보고, 예정 사업비 계상 및 실제 사업비 배분 기준과 같은 기준 및 보고서를 정비하고, 최선추정치 설정, 검증 및 준비금의 충분성 검증과 같은 선임계리사 연간보고서의 보고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인 공시보다는 개별 계약자의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액보험 투자형 상품의 투자원금 공개, 보험 안내 자료의 제공을 비롯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에 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사. 제도적 장치의 마련

국내 보험시장에 있어서 계리업무능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미래예측 모델에 대한 감독당국에서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금리시나리오에 대해 규정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미래 시장환경예측에 대한 규정된 모델을 개발 제시하고, 독자적인 계리시스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계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계리시스템의 연구를 통해 도와주고,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의 보험경영 관련 규제면에서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율적 계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정요건을 규정화하여 보험부채 평가시 보험부채에 대한 과소 적립이나, 과대 적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감독체계에 있어서도 리스크 감독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이 보수적인 보험부채평가제도가 아닌 최선추정에 의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식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자본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선진 외국사례와 같이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예측에 대한 최선추정이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자산·자본의 적정성분석 도입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부채평가의 자율성 증대로 직접적인 감독방식보다는 공시강화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